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 서류제출 안내

(데이터자격검정센터)

□ 유의사항

- · (유효기간)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(단, 학위기, 졸업장과 같이 수여받은 증서는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)
- · (제출기한) 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
- · (제출범위) 해당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 (예: 응시자격 1은 학력관련 서류만, 응시자격 4는 자격취득 관련 서류만)
- · (심사기준일) 제4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
- · (심사결과) 응시자격 서류를 미제출, 불완전제출, 허위기재하거나, 응시자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합격예정자격 취소
- · (결과통보) 심사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하며, 결과 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의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응시자격

응시자격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1.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(전공 무관)
- 2.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3.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전공, 직무분야 무관)
- 4.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(종목 무관)
- 5.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(종목 무관)
- 6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7.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8.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종목, 직무분야 무관)
- 9.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(직무분야 무관)
 - ※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

비고

- 1.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등",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"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"에 해당
- 2. "졸업예정자"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- 3. 최종 학년이 아닌 경우,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"대학졸업예정자",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"3년제 대학졸업예정자",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"2년제 대학졸업예정자"에 해당 (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, 학점은행제 등 기타의 방식으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)
- 4.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"대학졸업자", 그 졸업예정자는 "대학졸업예정자"에 해당
- 5. "이수자"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
- 6. "이수예정자"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
- 7.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(2)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일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

□ 제출기한 : <u>합격예정자 발표 차주 월요일~금요일 일과시간(휴일 등으로 변동기능)</u>

- 제출기간 동안에는 서류 보완이 가능하나, 기한이 지나면 서류를 제출 하거나 보완・추가할 수 없음
- 제5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 예시

필기시험 합격자예정자 발표	응시자격 증빙 서류제출	자격심사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	실기시험 원서접수	실기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2. 10. 21	22. 10. 24. 10:00 22. 11. 3. 18:00	22. 10. 24 22. 11. 4	22. 11. 7 22. 11. 11	22. 12. 3	22. 12. 23

-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을 심사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며,
 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(카카오톡 또는 SMS)
- 결과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)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

□ 제출서류

- ㅇ 공통사항
-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
-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,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
- 서류는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만 제출*
 - * 예) 응시자격 1은 학력 관련 서류만, 응시자격 4는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서류만 제출
- ㅇ 학력관련 제출서류
 - * 증명서류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며, 일부학교는 지원되지 않음

졸업자		· 졸업증명서, 학위증, 학위취득증명서(학위취득일자 포함) 中 1부	
	대학 전문대학	· 졸업예정증명서, 재(휴)학증명서, 재(제)적증명서 中 1부	
졸업예정자, 최종학년재학 진흥원		· (4년제)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· (3년제)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· (2년제)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(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, 현재 일반 정규대학/전문대학 재학중인 자는 해당없음)	

【주의사항】

- 재(휴)학, 재(제)적증명서 : 반드시 최종학년 이상 또는 조기졸업이 표시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경우 불인정

(예1 : 4년제 대학 재학중 3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) (예2 : 2년제 대학 재학중 1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)

ㅇ 경력관련 제출서류

구분		4대보험 가입자	4대보험 미가입자	
	자영업자	· 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		
일반 사업장	피고용인	·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· 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· 동일직업에 종사자(사업주제와의 시설확인서 1부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
폐업한 사업장	자영업자	· 경력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		
	사업주가 있는 경우	·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· 경력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(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
	사업주가 없는 경우	·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+ ·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제와의 사실확인서 1부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· 경력증명서 1부 + · 동일직업에 종사자(사업주제와)의 사실확인서 1부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
	자영업자	· 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		
프리랜서, 계약직	사업주가 있는 경우	·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	· 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+ ·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부 (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자(사업주 제외)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
	사업주가 없는 경우	·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※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+ · 동일직업에 종사자(사업주제와의 사실확인서 1부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· 경력증명서 1부 + · 동일직업에 종사자(시압주제와)의 시실확인서 1부 ※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	
군경력자	군경력자 사병, 장교 부사관 ·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 1부			

※ 경력증명서

-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(재직기간, 소속, 직위,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)를 발급받아 제출
-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양식(첨부 2) 작성 (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며, 날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사실확인서(첨부 3) 제출)
-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은 각각 발급 또는 작성
- 경력사항 진위에 관하여 별도 확인할 수 있음
- ※ 사실확인서 : 제공양식(첨부 3) 사용

O 해외학력(경력 포함) 관련 제출서류

대상	아포스티유 협약국가 (미국, 일본, 영국, 호주 등)	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(중국 등)	
외국학력취득자 (졸업, 재학, 이수증명서 등)	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등 증빙서류 사본 1부	· 학력 인증보고서 번역본 1부 ※ 업무대행처를 통한 발급서류 인정	
외국 업체 경력자 (경력증명서 등)	· 경력증명서 ※ 해당국가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, 국내 번역, 공증 후 제출	· 경력증명서 ※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후 번역 및 공증 후 제출	

【주의사항】

-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(학위명, 전공명, 이수기간 등) 명시 필요
- 학년 확인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불인정
- ※ 제출서류 준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한 경우 "외국학력(경력)서류 제출 연기 신청서"(첨부 1)를 제출하여 서류를 자격심사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당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
- ※ 유효기간에 제한없음

□ 제출방법

○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(www.dataq.or.kr⇒마이페이지⇒시험결과⇒증빙자료)에 응시자격 별로 별도 항목에 각각 나누어서 업로드

학력관련 항목	경력관련 항목	자격관련 항목	기타 항목
- 졸업증명서 - 학위증 - 학위취득증명서 - 할위취득증명서 - 졸업예정증명서 - 재(휴)학증명서 - 재(제)적증명서 - 학점인증증명서 - 기타	- 경력증명서 - 4대보험가입확인서 - 사업자등록증명원 - 폐업사실증명원 - 사실확인서 - 계약서 사본 - 자력표 - 기타	- 관련 자격증	- 외국학력(경력) 서류 제출 연기신청서

【주의사항】

- 업로드 관련 세부사항(각 항목당)

파일수	용량	형식
1개	1MB	pdf, gif, jpg, jpeg, png, bmp, zip, rar

- 하나의 항목에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파일을 모아 압축(zip, rar)하여 1개의 파일만 업로드해야 하며, 압축파일의 업로드 가능 용량도 1MB이므로 파일 크기 조절에 유의
- 제출서류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직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
- 오제출, 압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완전제출에 해당하여 필기합격예정자격이 취소되므로 업로드 후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관련문의: 1877-9817